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02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양도계약은 29,988,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2. 18.경 C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28,8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22. 5. 31. D조합에 C의 채무 123,949,0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42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6. 30. 'C는 원고에게 124,050,534원 및 그중 123,860,502원에 대하여 2022. 6. 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2021. 9.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22. 6. 20. E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선의 가액 29,9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어선을 C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C는 어선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으면 추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20. 12. 30. C 앞으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C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조합에 대출금 채권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D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로써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한 2021. 9. 6.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위 대출금 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0. 12. 18. C와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C는 우선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어선매입자금을 지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C는 완도군에 2020년 귀어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2021. 2. 22.경 D조합에 어업창업자금대출을 신청한 점, ④ 그러나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어선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한 행위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선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어선의 종류 : 동력선

선적항 : 소원면 통계항

선체재질 : FRP

총톤수 : 4.97톤

기관 종류· 마력 및 대수 : 가솔린선외기 기관 175.000 마력 2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2기

